

# 건설소식



## 특별발주제 9월 시범도입

### 고속도 정체해소 5개년 계획 수립

**10**월 9월부터 특별발주제가 처음 도입된다.

세부 형태는 발주기관이 설계 윤곽을 결정한 후 디자인빌드 업체를 선정해 보완하는 브리징 디자인빌드(Bridging Design-Build)와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가 채택된다.

또 건축가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사선, 건폐율 규제の特례를 부여하는 특별건축구역제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고속도로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선계획 및 세부과제'를 선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별발주제 2개 안 윤곽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모색했던 특별 발주제가 2가지로 윤곽을 잡았다.

첫 번째는 그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최고가치낙찰제다.

현행 가격 위주의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비가격요소인 기술력 등의 배점요소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위원회가 새롭게 접목할 제도는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브리징 디자인빌드 방식.

이는 발주자가 설계사와 계약을 맺고 대략적인 프로젝트 범위와 설계방향을 담은 디자인빌드 계약도서를 준비한 후 이를 근거로 디자인빌드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디자인빌드 업체가 발주자의 기본 설계 컨셉과 디자인을 토대로 나머지 설계와 시공을 수행·완성하는 역할을 맡는 것.

발주자 입장에서는 건설취지를 기본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설계범위를 사전 결정해 공사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업체 역시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구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설계를 원활히 수행하고 공사비를 맞추는 데도 유리하다.

위원회는 재정부에 의뢰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발주제의 실제 적용을 위한 운용지침도 오는 7월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부처협의를 거쳐 9월에 제정·시행기로 했다.

다만 턴키·대안 대상공사 금액기준 상향조정 등을 담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조치에 따른 국계약 개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병합 처리를 위해 이 같은 일정이 소폭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입장에서 개정방향과 시한을 제시할 수 있지만 세부검토 및 반영시기와 일정을 잡는 것은 재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 300억 미만 공사도 최저가제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에 우선 적용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이 올해부터 300억원 미만 ‘일반 건설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08년부터 300억 미만 전문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제를 도입키로 해 업계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개선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재하도급 근절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재하도급의 근절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최저가 낙찰제와 실적공사비의 적용대상을 확대, 공사비 거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재하도급과 명의대여 입찰을 방지키로 하고 300억원 미

만 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지방계약법의 적용대상인 서울시는 20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최저가 낙찰제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이 아닌 시 산하 공사·공단은 최저가 낙찰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산하 공사·공단의 일반건설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뒤 내년부터 전문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산하 지방공사, 공단에서 계획한 올해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예산은 모두 3,545억원에 달한다”며 “최저가제를 적용할 경우 올해 관련예산의 15%인 530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가 일정 하한율(80~87.75%)이상으로 낙찰 되도록 해 중소건설업체의 일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운찰제로 변질돼 재하도급이나 일괄 하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돼 왔다고 밝혔다.

시는 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올해부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로 대폭 확대해 적용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낙찰된 공사의 공종별 평균단가인 실적공사비를 적용, 특정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제도가 재하도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원가계산 방식을 대폭 축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와 산하 공사, 공단에서 시행할 계획인 2007년도 사업 가운데 이번에 추가로 실적공사비를 적용기로 결정한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예산은 약 3,758억원에 달한다”며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약 5%에 해당하는 1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최저가 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확대에 따른 영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보호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우선 공사계약 때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및 어음지급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전합의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이달 중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이 같은 보호정책을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비상구 설치 안해도 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다중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조기 완비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최소한의 안전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본부는 비상구 설치가 곤란한 대상은 실내 장식물 불연화 90%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때 비상구 설치를 면제해 주거나 비상구를 설치하되 형태나 구조, 규격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이 스프링클러나 경보설비 등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조, 규격 등을 완화해 주는 한편 방염대상물품 처리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행정처리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본부는 이와 함께 적용대상 2만 9,253곳 중 미비 업소 1만 4,310곳(48.9%)을 대상으로 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5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본부는 기한 내 소급적용 시설이 최대한 완비될 수 있도록 '조기완비추진대책본부'를 통해 교육 및 업소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등 시설 미비로 불이익을 받는 시설이 생기지 않게 할 방침이다.

### 배수시설 전문시공업자만 설치

#### 단독주택 우수처리시설 면제

**|**하루 우수 배출량이 2톤 이하일 경우 우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달아도 된다.

또 전문시공업자만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하수도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에 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 하수처리구역 안의 정화조 설치·관리가 보다 용이해 졌다.

하루 2톤 이하의 우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에는 우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해도 되는데 이는 가정에서 우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하수처리구역 안의 정화조 준공 때 실시하는 방류수 수질검사와 처리용량 200m<sup>3</sup>/일 이상의 정화조에 대한 전문 관리인 고용의무도 폐지된다.

우수량 증가에 따라 정화조를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정화조 용량의 120% 이내에서 200% 이내까지로 확대된 것도 완화된 사항이다.

아울러 배수설비는 전문시공업자가, 50m<sup>3</sup>/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담당하도록 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도 이번 개정으로 완화됐다.

환경부는 부과 대상을 우수발생량 1m<sup>3</sup>/일 이상에서 우수발생량 10m<sup>3</sup>/일로 확대함에 따라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안양시의 경우 개인주택(우수량 1m<sup>3</sup> 이상)을 건축할 때는 45만원을 부과했으나, 앞으로 10m<sup>3</sup>(건축연면적 1,600m<sup>2</sup>)이상 되는 건축물에만 450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마을하수도규모(50m<sup>3</sup>/일) 이상의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전문관리인을 고용해야 하는 우수처리시설 규모가 200m<sup>3</sup>/일에서 50m<sup>3</sup>/일로 축소된 것.

특히 처리량이 50m<sup>3</sup>/일 이상인 우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과 동일하다.

개정안은 이밖에 물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5,000m<sup>3</sup>/일 이상(신규시설)으로 하며, 재이용량도 배출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재이용수는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세차용수 등 생활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게 된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은 환경부 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